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에 관한 철학적 고찰

: 톨즈의 정의론과 센의 인간능력접근**을 중심으로

이 은 아***

(2008.06.02. 접수 / 2008.06.26. 1차수정 / 2008.07.08. 게재확정)

-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규범적 준거들을 마련하

* 현재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하는 공적 장기요양보호제도는 그 명칭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그 대상자를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장기요양보호의 대상자는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지체 및 정신장애인들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그 이유는 현재 공적인 장기요양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대상범위를 노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공적인 장기요양보호제도가 필요하고 이것이 독립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센(Sen)의 인간능력접근은 human capability approach를 번역한 것으로, 이 이론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capability에 대한 용어 번역이 다양하다. 최균 외(2006)의 연구에서는 ‘가능성’으로, 박성복(2004)의 연구에서는 ‘생활역량’으로, 박성복의 다른 연구(1999)에서는 ‘존재실현력’으로 번역하였고, 강철희 외(2005)의 연구와 이상호(2001)의 연구들에서는 ‘능력’으로 번역하였다. 필자는 ‘능력’이 그나마 가장 적합한 용어 번역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정신적인 기능이나 신체적 기능의 가능성”이라는 능력의 사전적 의미와 센이 제시하고 있는 capability의 개념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eunalee21@naver.com)

기 위한 첫 단계로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사회정의이론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것의 의미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차원들이 교차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놓여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정의 관점에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탐색해 보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이론으로서 롤즈(Rawls)의 정의론(Theory of Justice)과 센(Sen)의 인간능력접근(Human Capability Approach)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주제, 즉 이상적인 시민상으로서의 인간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기본적 재화 개념에 대해서 두 이론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필자의 논의는 롤즈의 기본재(primary goods)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정의론을 정책규범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센의 인간능력접근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반증해 주는 대안적 관점으로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탐색의 결과, 롤즈의 정의론은 비록 그 추상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한계는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 재화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규범적 근거들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장기요양보호, 사회정의, 기본적 재화, 롤즈의 정의론,
센의 인간능력접근

1. 서론

장기요양보호제도(long-term care services)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는 우리에게 이미 현실이 되어 버린 현대사회의 특징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한 제도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장기요양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부족, 그에 따른 공적 제도의 필요성, 제도 설계에 있어서의 그 구조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모든 사회제도들이 그러하고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들이 더욱 그러하듯이, 장기요양보호제도 또한 정책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오직 규범적인 사고(normative thinking)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공적인 장기요양보호제도를 2008년 7월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동안 이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제기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점들 중의 하나로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대상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을 제외하고 노인과 노인성 환자들로만 제한하는 것과 준비의 부족 및 재정상의 이유로 경증의 요보호자들을 배제하고 출발하는 것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상포괄성의 문제에 대해 대립되는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학계에서는 대체로 보편주의와 형평성이라는 가치들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명확하게 규범적 근거를 가지고 공유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사회보험이라는 구조를 지지하고 선택해 온 그간의 정책논리에서 본다면 장애인을 대상체계 안에 포함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장기요양보호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공식화하고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적인 논의가 부재해 왔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장기요양보호제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규범적인 근거들(normative

principled framework)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작업은 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탐색하는 논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이론들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이것의 윤리적 근거는 우선적으로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 입장이다. 그 이유는 장기요양보호제도가 그 어떤 제도들보다도 효율성이라는 가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그야말로 의존과 돌봄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인권의 문제와 개인의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 돌봄의 부담이 배분되는 방식과 관련된 형평성의 문제, 무엇보다도 세대 간 갈등과 성역할과 관련된 젠더(gender)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으로서 사회정의론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롤즈(Rawls)의 정의론(Theory of Justice)을 중심으로 하여 장기요양보호의 윤리적 근거를 찾아 보려고 한다. 롤즈의 정의론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학적 논의들이 자유, 권리, 정의 등의 다른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고려하게끔 만들었고, 서구에서 지금까지도 지배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에 대한 대안적인 이론으로서 평가받고 있다(박만섭, 2006: 35, 51-52).

그러나 WHO가 최근에 “장기요양보호에서의 윤리적 선택(Ethical Choices in Long-Term Care)”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그 안에 소개한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롤즈의 정의론은 그 자체가 전제하고 있는 인간관에 있어서, 또한 정의론의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인 기본적 재화(primary goods) 개념의 한계로 인해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WHO, 2002). 그와 같은 한계에 도전하는 논의들은 센(Sen)의 인간능력접근(Human Capability Approach)에 기초하고 있는데, 롤즈의 정의

론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차원에서도 셴의 이론에 기초한 논의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리해 보면, 이 글은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규범적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사회정의 이론들에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탐색해 보는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 탐색적 논의는 사회정의론을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정책선택의 차원이나 제도설계의 차원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연구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호의 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실천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연구도 아니다. 이 글은 우선적으로는 장기요양보호제도가 다른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들과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윤리적 혹은 철학적 근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나아가 향후에 진행될 보다 경험적인 연구들에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사회정의 관점에서, 특히 롤즈의 정의론이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중요한지를 논의해 보고, 다른 한편으로 그의 정의론이 갖고 있는 결함에 대해서 셴의 인간능력접근을 통해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은 결함들이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해결 가능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2. 장기요양보호와 사회정의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 단일 제도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환경,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규범, 문화 등을 고려한다면,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 관한 논의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장기요양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다른 복지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가치, 특히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재분배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호는 세대 내에서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도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분배

적 정의에 관한 원칙을 제시해주는 사회정의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정책기준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장기요양보호의 윤리적 쟁점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UN의 인간발전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s)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삶의 기본적인 기회들에서의 불평등(inequalities in basic life chances)” 문제이다(Nussbaum, 2002). 이 UN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상(象)은 “최소한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출생이나 인종, 성별, 장애 등과 상관없이 건강과 교육, 고용, 정치적 참여를 포함한 영역에서 괜찮은 삶의 기회들을 제공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돌봄제공자와 의존자 모두 괜찮은 삶의 기회들을 가질 수가 있다. 사실상 이 쟁점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차원이 ‘삶의 기본적인 기회들의 향유’라는 자유의 차원과 ‘불평등(inequality)’이라는 평등의 차원으로 교차하고 있다. 의존자의 측면에서 보면, 삶의 기본적인 기회들이 장기적인 의존 욕구가 없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동등하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삶의 기본적인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점과 이 기회를 다른 비장애인들에 비해 불평등하게 누린다는 점에 있어서, 바로 자유와 평등의 차원 둘 다에서 문제가 된다. 이제 돌봄제공자 측면에서 보면, 돌봄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여성들은 교육과 고용, 정치적 참여에 관한 기회들이 제한되곤 하는데, 실제로 장기적인 돌봄노동을 수행하다 보면 심지어 그들의 건강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회들의 향유에 관한 문제제기는 돌봄의 부담이 불평등하게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형평성의 문제와 만날 때 그야말로 윤리적 쟁점이 된다.

이렇듯, 장기요양보호가 사회정의라는 윤리적 가치와 만날 때 우리가 문제로서 인식하게 되는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일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삶의 기본적인

기회들에서의 불평등'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기본적인 기회들이라고 제한되고 있지만 바로 그 '기본적인' 것에 어디까지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대립적인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장기요양보호의 영역에서 복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어떤 사회적 재화들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재화들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들이 존재한다.

또한 사회정의와 관련된 장기요양보호의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는 시도 속에서 우리는 인간관에 대한 철학적 논의들을 만나게 된다. 의존자와 돌봄제공자 모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혹은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있는가? 아니면, 이들의 욕구 충족 및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타인의 존재 - 그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가 혹은 정치인과 같은 대리인(agent)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롤즈와 센의 정의론들을 비교하면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탐색하는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3. 장기요양보호와 인간관에 관한 논쟁

1) 롤즈의 정의론

존 롤즈(John Rawls)는 1971년에 출간한 《정의론》을 통해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개념을 도출함으로써 현대적인 사회정의론을 구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정의론은 윤리학의 측면에서 볼 때, 좋음(the good)에 대해 옳음(the right)의 우선성(the priority of right)을 주장하는 의무론적 윤리설에 기초한다. 이는 옳음을 좋음의 극대화로 규정하는 공리주의와 같은 목적론적 윤리설

에 대조되는 입장이다. 한편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자면, 롤즈의 정의론은 합리적인 현실 인간들이 사회계약이라는 경험적 절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정의의 원칙과 내용을 구성해 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에 해당된다(민경국, 2000: 135; 김기덕, 2005: 70에서 재인용). 바로 이러한 방법론적인 특징으로 인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이며, 이러한 절차적 정의의 작동 결과로 자율적인 구성원들에 의하여 합의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의에 관한 원칙이 바로 롤즈의 ‘정의의 원칙(the principles of justice)’¹⁾이다(남현주, 2007: 139-140).

이와 같은 정의의 원칙들은 사회구성원들이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²⁾에서 합의한 합리적 선택의 사회계약이라는 점에서 강한 설득

1)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흔히 ‘자유우선원칙’이라 일컬어지는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equal liberty)’과 ‘평등제한원칙’이라 불리는 정의의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 및 ‘기회균등의 원칙(fair equality of opportunity)’으로 구성된다. 이 정의원칙들은 1차적으로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권리와 의무의 할당을 결정하고 사회적, 경제적 이익들의 분배를 규제한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시민의 평등한 자유(equal liberties of citizenship)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사회체제의 측면(제1원칙)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사회 체제의 측면(제2원칙)으로 구분된다. 제1원칙은 시민으로서 누리는 기본적 자유들이 평등하게 제공되는 것을 요구한다. 제2원칙은 소득 및 부를 포함한 ‘기본적 가치(재화)’의 분배에 적용되고, 권한과 책임, 혹은 명령 계통에서 차이를 이용하는 조직들의 설계에 적용되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기본적 가치(재화)의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차등의 원칙), 동시에 지위와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Rawls, 1971: §11)

2)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은 공정한 정의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 최초의 계약 상황이다. 이것은 사회구성원들이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정한 상황이란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사유 실험의 공간이다. 롤즈의 직관은 공정한 상황 속에서 공정한 절차가 수행된다면 사회적 재화의 분배방식에 대한 사회적 선택에 대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상황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원초적 입장에 내용의 공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장치를 더하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impartial) 상태를 확보함으로써 만장일치의 정의의 원칙들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정의관이 바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다.

력을 갖고 있다. 또한 롤즈가 자신의 이론체계에서 핵심적인 분석개념으로 제시한 ‘기본적 재화(primary goods)’에 대한 논의는 ‘차등의 원칙’이라는 제2원칙과 함께, 그의 정의론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egalitarian liberalism)’로 해석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정원섭, 2003: 4). 롤즈에 따르면, 기본적 재화는 “사람들의 합리적 계획이 궁극적인 목적에서 다르더라도 사람들이 각자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므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적 재화는 일반적인 범용수단(all-purpose means)인데, 기본재 목록에 포함되는 것들 중에서 차등의 원칙에 따라 불평등한 분배가 가능한 재화는 지위와 직책, 소득과 재산,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재의 불평등한 분배는 최소수혜자(the least advantaged)에게 가장 큰 이득을 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³⁾.(박순성 외, 1998: 109; Rawls, 1993, 장동진 역: 94-96)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정의론은 고도의 추상성으로 인해 올바른 분배정책의 준거틀로서 사용하기에는 결함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반면에 롤즈의 정의론이 정책규범으로서 갖는 실제적 함의를 밝히려는 의미있는 시도⁴⁾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글의 목적 또한 간접적으로는 장기요양보호의 규범적 준거틀을 모색하기 위해서 롤즈의 정의론이 정책규범으로서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3) 이를 뒷받침해주는 합리성의 원리는 ‘최소극대화(maximin)’규칙으로, 무지의 베일에 의해 확률계산의 모든 근거가 배제된 상태에서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당사자들이 여러 대안들의 우열을 가릴 때 어떤 대안이 가져 오는 최악의 결과(minimum)가 다른 대안들이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들과 비교해서 가장 나은 것(maximum)이면 그 대안을 선택한다는 원리다. 롤즈는 이 최소극대화 규칙을 통해 선택의 상황에서 최소수혜자의 관점으로부터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러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차등의 원칙을 정식화하였다.(남현주, 2007: 143)

4) 실제적인 복지정책을 적용하여 롤즈의 정의론이 정책 규범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들 중 주목할 만한 국내 연구는 변영진(1994)의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으로 “존 롤즈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화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을 실례로”이다.

탐색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왜 하필 장기요양보호의 정책규범으로서 롤즈의 정의론을 보고자 하는가? 그 이유는 롤즈의 정의론이 서구 근대철학을 지배해 온 대표적인 관념들 중의 하나인 '사회계약'에 관한 이론으로서는 현재 가장 정교하고 탁월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비롯하여 모든 사회제도들의 기원이 '사회계약'으로부터 결과된 것이라는 관념은 지금까지도 보편적인 서구 사상인데,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약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및 제도는 성별(gender) 계약으로 사고하게 한다. 이는 나아가서, 상대적으로 뒤늦게 부상하고 있는 보편적인 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해 새로운 사회적 부양제도로써 새로운 성별 계약에 기초한 새로운 세대간 계약으로 이해하게 한다(Esping-Andersen, 2002, 유태균 외 역: 80). 따라서 가장 현대적인 사회계약론이라 할 수 있는 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보편적인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규범적 준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기로 하자.

2)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 및 도전

(1) 롤즈의 인간관에 대한 비판 논의

사회정의 관점에서 장기요양보호의 윤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는 학자들 중,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논자는 누스바움(Nussbaum)이다. 그녀는 센의 인간능력접근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주로 롤즈의 정의론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관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누스바움에 의하면, 롤즈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계약의 전통에 의해 공유되어 온 인간관은 서구적 사고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결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인 구성원들 간의 계약 성립이라는 로크적인 개념이다.”(Nussbaum, 2002: 43) 실제로 롤즈가 《정의론》 서문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가 구

상한 사회정의론은 로크(Locke)나 루소(Rousseau) 그리고 칸트(Kant)에 의해 제시된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의 전통적 이론을 보다 일반화하고 추상화함으로써 서구 전통을 지배해 온 가장 우세한 도덕철학으로서의 공리주의보다 나은 정의에 관한 체계적인 해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Rawls, 1971: viii). 또한 결과적으로 롤즈의 이론은 그 성격에 있어서 지극히 칸트적인데⁵⁾, 특히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인간상을 보면, 그의 인간관은 그야말로 칸트적인 도덕적 인간관, 즉 이성적(rational)이고 자율적인(autonomous)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칸트에게 윤리학의 중심적인 사상은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서(as an end in him/herself)' 간주해야 하며 '다른 이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as a mere means to the ends of others)'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의 기초를 제공한 이 사상은 실제로 현대에 와서 많은 나라들의 헌법과 국제 인권 헌장들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칸트의 인간관을 계승한 롤즈의 사회계약이론을 돌봄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보자면, 논쟁의 여지는 많다. 롤즈는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를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하게 될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a scheme of cooperation for reciprocal advantage)"로 생각하였고(Rawls, 1999, 황경식 역: 72),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완전한 사회적 협동이 가능한 성인들로서 가정하고 있다⁶⁾. 누스바움은 바로 이 독립적이고

5) 롤즈는 칸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않았으며 자신의 정의론을 구상하면서 칸트 실천철학의 형식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그 내용을 채우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원초적 입장에는 공정성을 도덕적으로 추구하는 면과 자기 이익을 합리적으로 도모하는 면이 공존하고 있고 전자의 합당성(the reasonable)이 후자의 합리성(the rational)에 우선한다고 함으로써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을 계승하였다.(김석수, 2005: 159-160)

6) 롤즈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정치적 정의관의 내용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할 때 선택하는 정의의 원칙들이다. 여기에서 원초적 입장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간주되는 합당하고(reasonable) 합리적인(rational) 시민들 간의 공정한 협력체계로서의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근본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Rawls, 1993, 장동진 역: 128)

경쟁력을 갖춘 성인기(adulthood)에 대한 가정이 허구라고 공격한다(Nussbaum, 2002: 43). 롤즈는 분명히 기본적인 정치적 선택의 상황으로부터 인간 존재가 경험할 수 있는 욕구와 의존의 다양한 형태들을 제외시켰다. 사회적 협동에 관한 바로 그의 개념은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호혜성(reciprocity)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고 전적인 의존 관계에 관한 고려는 명백하게 없다. 누스바움은 롤즈가 동물이 호혜성에 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자비와 인간성에 의해 보호되는 것일 뿐, “정의론의 범위 밖에 있으며, 동물들을 포함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계약의 교리들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Rawls, 1971: 512)”고 설명한 것을 근거로 하여, 독립적이지 못하고 호혜성에 대한 능력이 매우 부족한 실제의 많은 사람들을 정의론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Nussbaum, 2002: 47) 이와 같은 지적은 실제 사람들의 삶이 전적인 의존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출발하여,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가량을 불균형한 의존 상태에서 자라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다가 늙으면서 약해지고 다시 전적인 의존의 시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성인들 중에서도 모두가 완전한 신체적·지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실제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도 한다.

키타이(Kittay) 또한 누스바움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롤즈의 이론을 비롯하여 정의에 관한 계약이론들이 인간의 본성상 피할 수 없는 의존, 즉 연장된 아동기와 노령기의 의존, 질병과 장애로 인한 심각한 의존에 관한 사실과 사회적 결과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논한다. 나아가서 이와 같이 의존을 고려하지 않는 관점들은 돌봄대상자들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들의 욕구와 관심까지도 이론의 구성에서 제외하게 된다. 따라서 키타이는 돌봄대상자들과 돌봄제공자들, 둘 다의 욕구와 관심을 포함하는 것이 정의에 관한 이론으로서 하나의 충분요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한다.(Kittay, 2002, 77)

한편, 롤즈는 이와 같은 비판들에 대해서 그의 이론이 어떤 경우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른 경우들은 제쳐 두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는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돌봄에 대한 욕구가 “절박한 실제적인 문제(a pressing practical question)”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정치적 구조가 설계된 후에 입법적인 단계로 미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시민들은 하나의 완결적인 생의 단계들에 따라 완전하게 협동하는 (fully cooperating) 사회의 일원들이다. 이것은 모든 이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담당할 만한 충분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과, 아무도 매우 비싸거나 보기 드문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욕구로 인해 고생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와 같은 욕구를 갖고 있는 이들을 돌보는 문제는 절박한 실제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이 초기 단계에서, 사회정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의 완전하고, 활동적인 그리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인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런 까닭에, 특정한 어려운 복잡한 상황들을 제쳐 두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우리가 근본적인 경우를 다루는 이론을 세울 수 있다면 이 이론을 나중에 다른 경우들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Rawls, 1980: 546)

그러나 이와 같은 롤즈의 해명은 상당히 궁색해 보인다. 장기적이면서 전적인 의존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돌봄이 사회정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관점은 실제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혹은 무관심이 부정의(injustice)의 하나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서 이론적 결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누스바움과 키타이를 포함한 페미니스트들은 정의의 어떤 이론도 가장 기본적인 제도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돌봄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칸트적 사회계약 이론가인 스캔론(Scanlon)은 극단적인 의존의 경우들에 대해 롤즈보다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계약 이론에서 이 경우들을 다룰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사회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의존자들이 그들의 대리인(trustees)을 계약 당사자로서 세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계약이론이 도덕성의 오직 한 부분만을 설명

할 뿐이므로, 극단적인 의존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Scanlon, 1998: 177-187)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에 의해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해결될 수 있는가? 롤즈의 표현대로 “완전하게 협동하는” 대리인을 가상적인 원초적 입장에 포함하는 것은 의존자들이 소위 “완전하게 협동하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근거해서만 기본적인 정치적 제도의 틀 안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들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한 계약이고 계약 당사자들 간에는 대략적인 평등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의존자들은 그들이 사회계약에 참여할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협동하는” 계약 당사자들이 그들의 이해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사회계약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방법은 “완전하게 협동하는” 대리인이 그들 자신의 자녀나 노인부모를 위해, 그리고 그들 자신의 인생의 다른 단계를 위해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 이것은 아동의 경우 향후 성인이 되어 생산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것이고 노인은 젊은 시절의 생산 활동을 통해 이미 기여하였으므로 그들이 받는 돌봄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애기간 내내 생산 활동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돌봄에 대한 욕구 그 자체만으로 돌봄에 대한 권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바꿔 말해서, 계약론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으로서 사회적 협동체계에 참여하는 능력, 즉 사회적 협동에서 생기는 부담의 공정한 몫을 떠맡는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다. 사회적 협동과 호혜성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생산성이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이 계약이론에서 상호적이지 않은, 비대칭적인 의존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의존관계가 고려되는 다른 이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Nussbaum, 2002: 49-50)

(2) 센의 인간능력접근

그렇다면, 돌봄과 의존의 문제를 포함할 수 있는 정의론은 과연 무엇인가? 누스바움은 센의 인간능력(human capability) 관점에서의 이동을 제안한다. 이것은 서구의 전통에서 말하자면, 칸트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개념에 그 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한 정치적 개념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그 출발부터 사람을 능력이 있고 욕구가 있는 존재로서 보며,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의 욕구와 동물성(animality)으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개념이다. 또한 센의 인간관은 롤즈와 달리 인간을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질적인 존재로 규정한다(이상호, 2001: 294). 롤즈도 가치판단이나 행위동기의 다양성을 인정하였지만, 센은 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다양성을 장애, 질병, 나이, 성별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기후 조건과 같은 환경적 변수, 교육제도나 치안 및 위생, 사회적 관습이나 풍습 등의 사회적 변수까지도 포함하여 규정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동일한 실질소득에서도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가 달라지게 하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은 병원의 치료로 인해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아픈 사람은 같은 수준의 소득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갖는 삶의 질을 즐기지 못한다.(Sen, 1999, 박우희 역: 98-100) 따라서 센은 빈곤의 개념을 불충분한 소득에서 불충분한 능력 혹은 '능력의 박탈'로 확장한다. 이러한 접근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권리의 박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이 빈곤의 중요한 원인들 중의 하나라는 견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은 어떤 사람의 능력을 박탈하는 일차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저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능력의 박탈, 즉 실제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나아가 저소득과 능력의 박탈 사이의 관계는 공동체에 따라, 그리고 개인과 가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들보다 부유하면서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득분배의 통계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다양한 가치 있는 기회의 공간이라는 중요한 측면에서 보면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Sen, 1999, 박우희 역: 119-127)

이와 같이, 인간의 다양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센의 인간능력접근은 돌봄 및 의존의 문제와 관련하여 롤즈의 정의론이 줄 수 없는 중요한 함의들을 제공하고 있다. 의존자 및 돌봄제공자에게 가치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본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또한 개인의 복지실현을 위한 기능 선택의 폭을 증대시키는 것 등이 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3)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옹호

이제까지 롤즈의 정의론이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근본적인 결함을 갖는 이론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과연 그러한가?

다니엘즈(Daniels)는 롤즈의 정의론이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장기요양보호의 윤리적 근거로서 적용 가능하다고 논의하고 있다(Daniels, 2002: 68). 첫째, 롤즈의 정의론이 가진자(haves)와 가지지 못한 자(have-nots) 간의 거래(bargaining)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거래에 관한 이론들에서는 계약자들의 상대적 이익(relative advantage)이 협동의 규칙들을 만든다. 그러나 롤즈는 사회계약이 이와 같은 거래에 관련된다는 사상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고안해서 정의의 원칙을 형성하는 데 이익이 기초로서 작용한다는 관점을 분명하게 부정했다.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은 계약자들이 그들 자신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계약자들은 무지의 베일로 인해 공평할 수 있고(impartial) 자신의 실제적인 재주나 기술, 능력, 욕구에 관해서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롤즈의 정의론에서 서로의 차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전제는 강력하므로 거래에 대한 어떤 의미도 제거된다. 따라서 롤즈가 상정하는 계약 상황은 시민들이 누리는 근본적인 자유와 평등에 대한 도덕적 주장들로 구성된다.

둘째, 사회적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한 계약 조건을 선택할 때, 롤즈의 이론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주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롤즈가 상정하는 무지의 베일 뒤의 계약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의존을 포함한 동물적 욕구뿐만 아니라 가치와 목적, 나아가 영적 욕구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따라서 롤즈의 정의론은 설사 계약자들이 그들의 차이에 대해 무지하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들을 모델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논의에 근거해서 보면, 롤즈의 인간관은 더 이상 극도로 추상화되고 이상화된 도덕적 인간상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가치로 인한 이질성 혹은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과 같은 개념적 장치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어진다.

롤즈의 해명을 직접 인용해 보자면, “일단 우리가 계약론이란 개념을 생각하면 그 당사자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관심을 갖거나 이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의의) 원칙들이 생겨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쉽다...그런데 상호 무관심과 무지의 베일이 결합되면 이타심과 동일한 의도를 성취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조건들을 결합시키면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각기 타인들의 선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당사자들의 합리성과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의 그들의 처지로 인해서 윤리적 원칙들과 정의관은 일반적인 내용을 갖도록 보장되어 있다.”(Rawls, 1999, 황경식 역: 210-211) 다시 말해서, 계약당사자들의 상호무관심과 무지의 베일을 가정하여 채택된 정의의 원칙들은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조건들이다. 이 정의의 원칙들은 서로 이질적이지만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로서의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화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롤즈의 이론에서 이 재화들은 ‘기본적 사회재(primary social goods)’이며 기본적인 자유와 기회, 소득과 재산, 자존감(self-respect)의 사회적 기반 등이 포함된다. 정의의 원

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배분될 기본적인 사회재를 통해서 우리의 욕구가 충족된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셴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능력(capability)'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롤즈의 정의론과 셴의 인간능력접근이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롤즈의 정의론을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로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다음의 4장에서 롤즈가 정의의 원칙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분석 개념으로 사용한 기본적 재화에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고, 롤즈와 셴의 이론들이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고찰에서 다시 수렴 가능한지를 볼 것이다.

4. 기본적 재화로서의 장기요양보호

1) 롤즈의 기본적 재화⁷⁾

롤즈는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한정적 이익들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특정한 원칙들에 대한 합리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 사회재(primary social goods)'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계약당사자들이 가능한 원칙들 중에서 어떤 원칙들이 기본적 재화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지를 평가 비교함으로써 마침내 정의의 원칙들을 합의하는 데 도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기본

7) Primary goods는 '기본적 가치' 혹은 '기본적 선'으로 번역될 수 있다. 실제로 황경식 번역의 《정의론》 한국어판(2003)을 보면, 대체로 기본적 가치로 번역이 되어 있고 맥락에 따라서는 선(善)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다. 기본적 재화의 목록에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서 자존감(self-respect)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나 선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롤즈가 개정판(1999) 서문에서 밝혔듯이 primary goods를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일생동안 협력을 아끼지 않는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지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재화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적 재화의 목록⁸⁾에 롤즈의 정의의 제1원칙에 의해 담보되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 정의의 제2원칙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공정한 기회 평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차등의 원칙에 의해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소득과 재산, 자존감(self-respect)의 사회적 기반을 포함하였다. 롤즈의 설명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들이 특정 원칙들을 합리적으로 합의하고자 할 때 이러한 기본적 재화에 의존하게 된다는 생각의 전제는, 시민들이 그들의 선을 추구하고 그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도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사회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범용수단(all-purpose means)으로서 기본적 재화를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롤즈가 상정하는) 당사자들의 목표는 기본적 재화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대표하는 시민들이 완전한 개인이 되도록, 즉 그들의 도덕적 능력을 적절히 계발하여 충분히 행사하고 그들이 형성하는 한정적 선(좋은)의 개념(ideas of the good)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다.(Rawls, 1993, 장동진 역: 94-96) 요약하자면, 정의의 원칙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재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적 재화 개념의 또 다른 역할은 어떠한 정의관이 공정한 분배에 관한 정의관(the conception of justice)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롤즈의 정의의 원칙들 중에서 차등의 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될 것으로 합당하게 기대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단순한 불평등은 부정의(injustice)가 된다. 롤즈가 제시한 정의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개념은 “모든 사회적 재화들- 자유, 기회, 소득, 재산 및 자존감의 기반 -은 이들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8) 롤즈는 기본적 사회재(primary social goods)와 기본적 자연재(primary natural goods)를 구분하였다. 그가 규정하는 기본적 사회재는 합리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자 하는 것들로서 사회의 기본 구조가 분배하는 것이다. 권리와 자유, 기회, 소득과 재산, 자존감의 기반 등이 그 예다. 반면에, 건강과 정력, 지력, 상상력 등은 자연재로서, 물론 이것들을 소유하는 것에도 사회의 기본 구조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Rawls, 1999, 황경식 역: 108)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awls, 1971: 62) 종합하면, 롤즈의 이론에서 기본재 개념은 한편으로 합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협동의 이득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박순성 외, 1998: 109).

롤즈는 기본적 재화를 설명하는 완성된 틀을 제시하기 위해서, ‘합리성으로서의 선(좋은)⁹⁾(goodness as rationality)’의 개념과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정치적 시민관을 결합시켰다. 그리고 나서 시민들이 그러한 인격체로서 전 생애에 걸쳐 ‘정상적이고 완전하게 협력적인(normal and fully cooperating)’ 사회구성원으로 간주될 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바인 사회적 기본재의 목록을 구성하려고 하였다.(Rawls, 1993, 장동진 역: 220) 바꿔 말하면, 기본적 재화의 목록이 인간의 욕구 및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과 특징적인 측면들, 그 욕성을 위한 필요조건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원칙¹⁰⁾(Aristotelian Principle), 사회적인 상호의존¹¹⁾

9) 롤즈는 《정의론》(1971)에서 기본적 재화와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특징짓기 위해 좋음(the good)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본적 재화에 대한 합리적인 선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원칙들의 바탕에 깔려 있는 합리성의 개념을 해명하기 위해서 좋음(선)에 대한 기초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좋음에 대한 이론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옳음의 개념(the concept of right)이 좋음의 개념보다 우선한다는 옳음의 우선성(the priority of right)을 전제한다.(Rawls, 1971: 395-396) 이러한 우선성은 정의관을 수립할 때 어떤 좋음의 개념도 사용할 수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정의관도 옳음과 좋음 중 전적으로 어느 하나에만 의존하여 성립할 수 없으며 이 둘은 도덕이론의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해야만 한다(Rawls, 1993, 장동진 역: 214).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이미 주어진 옳음의 원칙들에 입각한 생활 방식에 부합될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옳음의 원칙들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도 좋음에 대한 어떤 관념에 입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동기 혹은 목적에 대한 가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좋음에 대한 기초이론의 목적은 정의의 원칙에 이르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 재화에 대한 전제를 확보하는 데 있다.(Rawls, 1971: 396)

10) 롤즈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인간 존재는 그들의 능력이 현실화되어 행사됨을 즐거워하며 이러한 즐거움은 그러한 능력이 실현됨에 따라 그리고 그 복잡성이 보다 커짐에 따라 더

(social interdependence)의 필요성과 결합된 ‘합리성으로서의 선(goodness as rationality)’의 개념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롤즈는 기본적 재화란 합리적인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다른 어떤 것을 원하든지 간에 이러한 재화들을 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다 더 큰 자유와 기회,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수단들을 얻고 싶어 할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목표들과 함께 자존감이라는 기본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계약당사자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그들에게 가능한 정의관(the conceptions of justice)들을 평가한다는 것이다.(Rawls, 1971: 433-434)

롤즈는 기본적 사회재의 목록에서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였는데 션 또한 이것에 주목하였다. 기본적 재화 목록에 자존감(self-respect)의 사회적 기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장기요양보호의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종종 이들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하는데, 이러한 방식에서의 돌봄은 타인들과 동등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모욕이 되고, 완전한 사회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돌봄의 핵심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존감을 보호하려면 장애의 많은 종류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사고로는 이들의 자존감을 보호할 수가 없다. 돌봄 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 내에서의 비공식적인 돌봄노동(informal care work)이 전형적인 노동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자존감의

육 증가된다는 것이다.”(Rawls, 1993, 황경식 역: 550-551) 롤즈에 따르면 이러한 원칙은 동기 유발의 원칙이다. 이것은 우리의 주요 욕구들의 대부분을 설명해주며 우리의 활동 과정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어떤 특정한 일을 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Rawls, 1971: 426-427)

11) 사적인 애정과 우애, 의미있는 활동과 사회적 협동, 지식의 추구 및 미적 대상의 형성과 관조 등의 이러한 가치들이 갖는 사회적인 상호의존성은 이 가치들이 이것들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선일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선을 증진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Rawls, 1971: 425)

기반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 노동이 유급노동일 때조차도 그다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므로, 유급화하는 것만으로는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가치는 직업과 직업에서의 성공에 연결되기 때문에 가정 내의 돌봄노동자들이나 돌봄 책임으로 인해 시간제 노동에만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겪을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의 영역에서 사회가 자존감의 기반을 기본적 재화로서 제공한다는 것은 가정 내에서의 돌봄 책임의 분배 측면과 비공식 돌봄에 대한 공적인 지원 측면, 돌봄 친화적인 노동시장 환경 조성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2) 장기요양보호와 기본적 재화의 확장

(1) 선택의 능력, 자유, 기회

위에서 살펴 본 롤즈의 기본적 재화(기본재) 개념과 목록이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기반으로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정 혹은 확장이 필요하다는 비판 논의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누스바움은 정의로운 사회가 분배해야 하는 기본적 재화에 대한 더욱 풍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롤즈의 기본재 목록에 건강과 여가, 교육, 정치적 참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엇보다도 돌봄의 가치, 즉 의존기간 동안의 돌봄에 대한 욕구(the need for care)를 기본재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돌봄을 기본재 목록에 추가한다는 것은 돌봄이 시민의 기본적 욕구들 중 하나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기본재 목록을 수정함으로써, 우리는 의존의 기간이 삶의 요소들 중의 일부분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서 누스바움은 롤즈의 기본재 목록을 자신의 기본적 능력(capability)의 목록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롤즈의 기본재 목록이 소득과 재산과 같은 물질에 관한 것과 자유 및 기회, 자존감의 기반 등 비물질적인 인간의 능

력에 관한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 구조부터가 이질적이므로 공정한 분배와 복지에 대한 지표 체계로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는 센이 빈곤(비복지)을 능력의 박탈로 정의하면서 평가 목적에 적절한 (정보) “공간(space)”으로 공리주의자들의 효용이나 롤즈의 기본적 재화가 아닌 “개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실제적 자유, 즉 능력”을 보자는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Nussbaum, 2002: 52; Sen, 1999, 박우희 역: 103)

센과 같이 인간의 이질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불평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기 힘들다. 행위동기의 다양성을 고려할 경우, 기본적 재화와 같은 범용수단을 확보하기 힘들며, 설령 확보한다고 해도 능력의 다양성을 고려할 경우 동일한 기본재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센의 관점이다.(이상호, 2001: 298) 센에게 있어서 인간은 행위동기나 능력 측면에서 다양성과 이질성을 지니면서도 스스로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나 기회에 중점을 둔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으로 기본재를 전환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센의 예를 빌리자면, 장애인인 비장애인보다 더 큰 기본재의 집합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실제적 기회를 더 적게 누릴 수 있다. 노인이나 병자들 또한 이와 같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이 이미 성취된 ‘기능’보다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기능’은 개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다양한 행위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은 달성 가능한 기능의 대안적 집합이다. “능력은 곧 자유, 즉 대안적 기능 집합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 또는 다양한 생활양식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이다.(Sen, 1999, 박우희 역: 104) 바꿔 말하면, 능력은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집합 중에서 특정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이 능력은 성취 수준과는 다르다. 이미 성취된 기능이 삶의 질이라는 실제 복지수준을 구성한다면,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즉 '현실적인 기회'를 구성한다. 여기서 자유는 복지를 위한 수단이자 복지를 구성하는 요인이다. 또한 이미 성취된 복지수준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이상호, 2001, 299) 그러므로 복지에 대해서도 실제 성취수준보다 성취할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해진다. 성취할 수 있는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이것은 가치 있는 삶의 한 구성요소이면서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데 바로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서의 능력은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도 연결된다. 따라서 센은 복지의 수단으로서의 도구적 자유에 대한 유형으로 ① 시민권을 비롯한 넓은 의미의 정치적 자유, ② 경제적 권리, ③ 교육 및 보건과 같은 사회적 기회, ④ 투명성 보장, ⑤ 사회보장을 통한 보호적 안전 등을 제시하였다(Sen, 1999, 박우희 역: 60-62).

(2) 기본재 개념의 확장

그렇다면 이러한 센의 인간능력접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 공간들이 롤즈의 기본재 개념 및 목록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가? 지금부터 장기요양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양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장기요양보호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우선 앞에서 살펴 본 센의 인간능력접근에서는 복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개인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삶을 구성하는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즉 삶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 혹은 현실적인 기회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롤즈가 기본적 사회재를 중심으로 복지를 평가하는 관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근거이다. 그렇다면 센에게 있어서 동일한 의미인 기회, 자유, 능력은 롤즈가 기본재 목록에 제시한 자유 및 기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가?

롤즈는 효용만을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 공리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효용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기본적 재화를 복지의 객관적 기준으로 삼았다. 이것의 의미는 개인의 본질적인 자유와 이의 획득에 필요한 자원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롤즈의 민주주의적 평등(democratic equality) 원칙은 기회균등원칙과 차등원칙을 합한 것인데, 이것은 다양한 지위와 직책을 지닌 대표자들에게 복지와 후생에 대한 기대치¹²⁾를 할당하는 문제이다. 이 복지와 후생에 대한 기대치의 근거가 바로 기본적 사회재(primary social goods)다. 즉, 복지와 후생은 기본적 사회재의 지수(index)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롤즈의 정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능력(capability)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재화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차등의 원칙은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이 최소 수혜자들(the least advantaged)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본재를 분배하는 것이다. 이 차등의 원칙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이 사회협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의 원칙이다. 센과 쉐의 추종자들은 롤즈의 정의론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관에서 사회협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약자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지만, 오히려 롤즈의 차등의 원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이익을 겪는 약자들이 사회적 협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 재화의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에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 보면, 의존자 및 돌봄제공자들이 최소 수혜자더라 할 때 자유와 기회, 권리, 소득과 재산,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 등의 기본적 재화들을 이들의 인생 전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가 있다.

특히 롤즈는 그의 이론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재화는 자존감(self-respect)이라고 강조하였는데¹³⁾, 이것은 장기요양보호제도

12) 이러한 기대치(expectation)는 대표적인 개인들의 사회적 지위에서 바라 본 인생 전망(life prospect)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개인들의 기대치라는 것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통한 의무 및 권리의 분배에 의존한다(Rawls, 1999, 황경식 역: 110).

13)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 재화라는 이유는 자존감이 갖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다. 롤즈에 따르면, 자존감의 한 측면은 개인이 갖는 자기 자신의 가치감(a person's sense of his own value) 등을 포함하고 있고, 자존감의

(long-term care services) 자체가 의존자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꿔 말하면, 공적인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로서 기능할 수 있을 때, 장기요양보호는 롤즈의 기본재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니엘즈는 롤즈의 기본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기회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선의 현실적인 기회라는 의미의 '실제적인 자유' 개념과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Daniels, 2002: 71-72). 그의 직관은 근본적으로 만성질환을 겪고 있거나 정신 및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기회를 적게 갖는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돌봄대상자들을 수발해야 하는 돌봄제공자들 역시 돌봄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에 비해 적은 기회를 누린다. 만약에 이들이 누리는 적은 기회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의 범위'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롤즈의 계약당사자들이 공정한 기회 균등(fair equality of opportunity)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채택한 이상, 우리 사회가 돌봄 -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재화를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근거는 마련된 셈이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기회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혹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기요양보호 자체를 기본재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롤즈의 정의론은 이제 장기요양보호에 관련된 제도들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준거틀로서 가능해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대로 결국 두 이론이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로서 하나로 수렴될 수 있다면 남아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필자는

다른 측면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ability)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그는 원초적 입장의 계약당사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존감을 침해하는 사회적인 조건들을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들에 의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다른 원칙들에 비해서 자존감에 대해 더 지지적이라는 사실로 인해 계약당사자들이 그것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결국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채택하는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언제 어떻게 이용하게 될지 모르는 공적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으로서 필요하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호의 영역에서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셴의 도전이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셴에 의하면, 롤즈의 정의론은 기본재 목록을 어떻게 구성하든지 간에 재화의 소유를 복지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시된다. 이러한 관점은 재화를 기능으로 전환할 때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된다. (최균 외, 2006: 349) 따라서 롤즈가 주장하는 바대로 장기요양보호의 대상자 및 돌봄제공자들에게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을 평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적 변수를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셴의 능력접근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자 실질적인 기회인데 이는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유의 확장은 통제력을 갖고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이것은 선택의 수만 늘린다고 해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수발보험에서 제공하는 수발수당은 비공식적인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성격을 갖는데, 이것이 돌봄대상자에게는 시설과 재가복지 사이의 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반면에 돌봄제공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가족내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이는 여성이므로 수발수당은 성역할(gender role)의 공고화 및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취업율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이진숙, 2008.: 35-41). 이와 같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의 현금급여가 돌봄제공자들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적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은, 바로 셴의 능력접근이 복지에 대한 실제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결론적으로 두 이론에서 모두 - 기본재 목록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기본적 재화들의 개념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아니면 기본재접근을 능력접근으로 대체하거나 간에 - 우선적으로 장기요양보호를, 크게는 건강 및 돌봄에 대한 욕구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 장기요양보호의 규범적 준거틀, 그 가능성의 모색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본질은 의존과 돌봄의 관계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또한 우리 모두는 생애를 통해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기간들을 가진다. 이렇듯 의존(dependency)은 인간 조건의 부분이다. 우리는 이 돌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갖는가? 이것이 사회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 중의 하나이며, 정의에 관한 이론들은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공해야 하는 임무를 갖는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제적 논리는 돌봄 문제까지도 마치 효율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다루려 하지만, 돌봄 문제에 접근하는 첫 발걸음은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이고 사회정의라는 가치개입적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사회정의의 이론가로서 일컬어지는 존 롤즈는 후기 저작에서 자신의 정의론을 정치적 정의관을 제시하는 이론으로 그 범위를 좁혔는데, 그가 밝혔듯이 정의론은 입헌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구조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 낸 하나의 (정치적) 도덕관일 뿐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공적 정치 문화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어떤 근본적인 개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Rawls, 1993, 장동진 역: 216). 다시 말해서, 롤즈의 이론은 기본적인 정치 구조의 틀을 제시하는 것에 주력했을 뿐, 구체적인 제도들의 전제와 내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호제도라는 특정 제도의 윤리적 전제와 제도의 내용에 대한 규범적인 논의는 롤즈의 정의론을 폐기하지 않고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출발하였다.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자가 전개한 탐색적 논의는 주로 이상적인 시민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기본적 재화 개념에 대해서 롤즈의 정의론과 센의 인간능력접근, 이 두 이론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탐색을 통해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규범적 준거들을 마련하는 작업이 어디에서부터 가능한지를 보고자 했다. 필자의 논의는 롤즈의 기본재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정의론을 정책규범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셴의 인간능력접근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반증해 주는 대안적 관점으로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탐색의 결과, 롤즈의 정의론은 비록 그 추상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한계는 보이고 있지만, 그 이론의 핵심적인 분석개념인 기본적 재화의 개념과 목록을 확장함으로써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규범적 준거들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주는 정책적 함의는 우리 사회가 장기요양보호를 둘러싼 욕구, 즉 의존 및 돌봄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기본적 재화를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는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는 사회정의론들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체제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의존 및 돌봄에 관한 욕구, 가치, 기회 혹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당위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희·이홍직·홍현미라. 2005. “실업자의 재취업에 관한 분석: 인적자본관점(Human Capital Perspective)과 인간능력관점(Human Capability Perspective)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제 57권 제3호, pp. 223-249.
- 김기덕. 2002. 『사회복지윤리학』. 나눔의 집.
- _____. 2005.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철학적 고찰: 윤리적 측면과 인식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6호, pp. 67-90.
- 김석수. 2005. 『칸트와 현대 사회철학』, 울력.
- 남현주. 2007. “사회정의연구의 두 영역: 규범적 영역과 경험적 영역.”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2호, pp. 135-159.
- 박만섭. 2006. “정의: 경제학과 철학의 접점.” 『한국사회』 제7집 제2호, pp. 33-66.
- 박성복. 1999. “삶의 질의 개념형성과 정책지표체계의 예시적 구성 - Sen의 capability 개념의 비판적 확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제11권 제4호, pp. 835-856.
- _____. 2004. “노인의 삶의 질 연구를 위한 통합적 접근.” 『서울행정학회 2004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217-233.
- 박순성·이상호. 1998. “사회정의와 정치경제학: 맑스, 롤즈, 센.” 『사회경제평론』 제11호, pp. 93-118.
- 변영진. 1994. “존 롤즈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화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을 사례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이상호. 2001. “센의 능력과 사회정의: 롤즈의 정의관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제17호, pp. 283-316.
- 이진숙. 2008. “독일 수발보험에서의 수발수당에 대한 연구 -쟁점과 효과 평가.” 『사회복지정책』 제32집, pp. 27-53.
- 정원섭. 2003. “공적 이성과 민주적 의지 형성: 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철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최균 · 서병수. 2006. "빈곤연구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Sen의 가능성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 측면과 측정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5집, pp.333-362.

Daniels, Norman. 2002. "Justice and Long-Term Care: Need We Abandon Social Contract Theory?" In *Ethical Choices in Long-Term Care: What Does Justice Require?* ed. by WHO.

Esping-Andersen, Gøsta., Duncan Gallie, Anton Hemerijck and John Myles. 2002.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유태균 외 역, 나남출판.

Kittay, Eva Feder. 2002. "Can Contractualism Justify State-Supported Long-Term Care Policies? Or, I'd Rather Be Some Mother's Child." In *Ethical Choices in Long-Term Care: What Does Justice Require?* ed. by WHO.

Nussbaum, Martha C. 2002. "Long-Term Care and Social Justice: A Challenge to Conventional Ideas of the Social Contract." In *Ethical Choices in Long-Term Care: What Does Justice Require?* ed. by WHO.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1980.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77, No. 9, pp. 515-572.

_____. 1993.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역, 동명사.

_____. 1999. 『정의론(개정판)』, 황경식 역, 이학사.

Scanlon, Thomas. 1998. *What We Owe to Each other*. Harvard University Press.

Sen, Amartya. 1999. 『자유로서의 발전』, 박우희 역, 세종연구원.

WHO. 2002. *Ethical Choices in Long-Term Care: What Does Justice Require?*
WHO.

<Abstract>

Philosophical Exploration of Ethical Grounds
for Long-term Care Services:
Centered on Rawls's Theory of Justice and
Sen's Human Capability Approach

Lee, Eun A*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ethical grounds for long-term care services so a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normative principled framework of long-term care service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justice, the philosophical exploration enables us to find out the ethical issues around long-term care, which are generated from the intersection of levels of liberty and equality. This paper adopted Rawls's theory of justice and Sen's human capability approach as the guidelines to address the ethical issues around long-term care. In regard to setting up the ethical grounds for long-term care services, this paper examined Rawls's theory and Sen's approach on the two matters in dispute: the conception of human being as the image of an ideal citizen; and the concept of primary social goods that should be allocated universally. My discussion to search for the possibility of Rawls's theory as a policy-normative one is focused on his concept of primary goods. Sen's approach 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help to assess this possibility. In doing this, we find that Rawls's theory of justice, through broadening the notion

*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eunalee21@naver.com)

of opportunity that forms one of the primary goods, could provide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normative principled framework of long-term care services.

Key words: long-term care, social justice, primary goods,
Rawls's theory of justice, Sen's human capability approach